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7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권향엽・박지원・박해철

정동영 · 허성무 · 김기표

이병진 · 김병기 · 김 현

곽상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 도록 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돌봄 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학생의 안전대책"을 "학생의 안전대책, 보호인력의배치"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		
	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		
	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		
	하여야 한다.		
③ <u>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u>학</u>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생의 안전대책</u> 등에 필요한 사	학생의 안전대책, 보호인력의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배치</u>		